

여주시 공고 제2019-1448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『폐기물관리법』 제8조 제1항(폐기물의 투기금지 등) 위반에 따라 과태료 독촉, 체납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19. 12. 17.

여 주 시 장



1. 제 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, 체납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2. 근거법규 :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8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3. 공고기간 : 2019. 12. 17. ~ 2019. 12. 31. (15일간)
4. 대 상 자 : 세부내역 붙임 참조
5. 공고내용
 - 납부의무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여주시청 자원순환과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, 유선(☎031-887-2451~4)으로 연락을 하여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 -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24조(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)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,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의 증가산금(최대 60개월)이 가산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: 여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(☎031-887-2451~4)